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43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김태선 · 임미애 · 문대림
허성무 · 김상욱 · 임호선
이원택 · 민홍철 · 송옥주
문금주 · 김정호 · 최혁진
윤준병 · 이병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를 세계적인 해운 · 항만산업, 조선 · 자동차 · 석유화학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문인력이 집중되고,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

서는 행정·주거·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로 확산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 비용의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전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해양수산업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이전기관”이란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해양수산업기업”이란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해양수산업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제3호의 해양수산업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해양수도 조

성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하 “이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등의 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규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등의 본부(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이전하여오는 이전기관등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전기관등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이전기관등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전기관등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기업

에게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양수도 조성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전기관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자녀 학업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5.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환급에 관한 사항
6. 이전기관의 이전에 따른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등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우선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주직원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등의 소속직원에 대한 주택관련 대출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이전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이전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